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828호

2026년 울산광역시 직원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직원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기간	근무지(장소)
기간제근로자 (조리원)	2명	근무시작일 ~ 1년 (1일 5시간 근무)	총무과 (직원식당)

2. 시험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
9. 28.(월) ~ 10. 8.(목)	10. 6.(화) ~ 10. 8.(목)	10. 16.(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10. 26.(월) 예정**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누리집 (http://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응시자는 수시 확인바람)

○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함께 공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1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18세 이상**

○ 성　　별: **제한 없음** ※ 남성인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요건(다음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가. 2026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 제외)

○ 다음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제 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제2조(정의)**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집단급식소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합산경력 1년 이상)

- 근무경력 판단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사립학교, 일반 기업체 및 민간병원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관련 근무 경력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유 의 사 항 >

○ 응시자격에 기재된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가점은 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금번 채용에는 가산점이 미적용됨

4. 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

1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우대사항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합계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평가항목 : ①응시자격 적격 여부 ②기본역량 및 발전가능성 ③우대사항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2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정 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 요소	
가. 가치관 및 정신자세	나. 직무분야에서의 역량과 자질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1) **(합격)**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합격 결정) 평정요소 중 ①직무분야에서의 역량과 자질, ②가치관 및 정신자세, ③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

2) **(불합격)**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3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함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 파악 후 최종합격자 발표

5. 근무조건

가) 신　　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울산광역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과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등을 적용

나) 보　　수* * '26년 당초예산(기간제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름

1) 기본급: 일급 53,400원 × 근로일수

2) 수　　당: 내부규정에 의함(초과근무, 가족수당, 휴일수당, 급량비, 교통비 등)

다) 근무시간: **주 5일(1일 5시간, 07:30 ~ 13:00) / 휴게시간 30분 포함**

라) 근무기간: 근무시작일~1년

마)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름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6. 10. 6.(화) ~ 10. 8.(목),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본관 9층)

※ 주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팀

○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하며, **접수기간 이후 문자로 접수번호(응시번호)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전에 유선(☎ 052-229-2444)으로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구 분	주 요 내 용
필수 제출 (공통)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3호 서식) 2. **응시원서**(별지 제4호 서식) 3. **채용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 4. **자기소개서**(별지 제6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8.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21호 서식)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22호 서식) 10.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11.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우대사항으로 인정 - 초본은 **공고일('26. 9. 28.)이후 발급분**이어야하고,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 사항 변경(개명이력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는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 검사 후 발급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간유의**
해당자 제출	**12. 경력증명서(경력사실확인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구 분	주 요 내 용
	- **공고일 기준('26. 9 28.)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사본 제출도 가능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상근·비상근 여부, 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정, 발급기관 직인·날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을 첨부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담당업무 미기재, 발행기관 직인 누락 등) 등의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 소속한 회사가 도산 또는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폐업사실증명서(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로 갈음 - 경력증명서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또는 공단 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14.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 자격증(수첩형) 사본 제출이 원칙 -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갈음 가능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 자격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 서류는 **각각 1면으로 인쇄**하여, 순서대로 정리 후 반드시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양면인쇄, 2쪽 모아찍기,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마.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모집**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 결정**됩니다.

사.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자. **원서접수 및 면접시험 응시 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차. **예비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순번대로 본인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카. **채용 서류 반환**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간**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요청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 채용 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단, 인사, 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사항: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052-229-2444)**
- **직무관련** 사항: 울산광역시 총무과 **공무원복지노사팀(☎052-229-2452)**

참 고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군	선발예정인원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2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울산광역시청	본청 직원식당(총무과 소속)

주요업무	○ 급식품의 위생적 조리 및 배식 활동 ○ 급식시설 청소 및 소독 ○ 식재료 검수 및 관리 지원
필요역량	○ 급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신체능력 ○ 의사소통 능력, 정보이해 능력, 조직이해 능력 ○ 서비스 마인드, 업무에 대한 성실성·책임성
필요지식	○ 급식품 조리에 관한 지식, 급식 시설물 활용에 관한 지식 ○ 조리계획 수립 및 활동 능력, 사후관리 능력
응시자격	**관련분야 : 조리원**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고문상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 18세 이상('08. 12. 31. 이전 출생) ○「식품위생법」제40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합산 경력 1년 이상) ○ 조리기능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별지 제3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응시분야	비 고
		기간제근로자(조리원)	

□ 제출서류 목록

구분	목 록	제출여부
필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2. 응시원서	
	3. 채용지원서(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8.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0.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병역, 및 인적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1. 건강결과 진단서(구 보건증) - 검사 후 발급까지 기간 소요되므로 유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등록 시 제출
해당자	12.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 '경력사실확인증명서' 제출요망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4.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하고, 위 순서대로 제출**

<별지 제4호>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조리원)**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응 시 표 울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자필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제출

○ **응시번호 : 응시자 작성금지(원서접수 시 응시번호 부여)**

○ **응시분야 :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분야 작성**

*(예시) 기간제근로자(조리원)

○ 공고문 중 **응시분야별 우대사항 반드시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별지 제5호> 기간제근로자등 채용지원서

채용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분야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응시번호	채용담당자가 기재함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생년월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예정) >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예정) >			

2. 응시자격사항(체크)			
공통자격	거주지	응시연령	병역(남성은 면제 또는 병역필)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3.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				
근무경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조리기능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발행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2026. ○○. ○○. 작 성 자 : (서명)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가급적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8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채용심사 관련 자료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등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9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11조 각호 결격사유,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울산광역시	채용방법 공개채용	채용직위(직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유 울산광역시 직원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별지 제21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22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 시험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참고서식> ※ 근무기관의 별도 증명서 발급 서식이 없을 경우 활용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 근무일수	년 월 일	주 근무시간	시간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위)	특이사항
~		(구체적으로 기술)		
~				
~				
~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근무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참고서식> ※ 근무기관의 별도 증명서 발급 서식이 없을 경우 활용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기관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기 간	부 서	직급(위)	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술)	
	20XX.XX.XX. ~ 20XX.XX.XX.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 ○ (전화 : - -)

<별지 제20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필요 시 채용절차 종료 후 제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응시분야 기재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받는 사람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채용팀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2026년도 울산광역시 직원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